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2. 16(금) 10:00

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
설치 지원 조례안
(푸른미래도시국 건축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93호
- 나. 제 출 자 : 정재동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2. 제안이유

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화재 등 위기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다. 지원대상 및 신청, 설치비용 지원기준을 규정함(안 제5조 ~ 제7조).
- 라. 설치방법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.
- 마. 심의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.
- 바. 설치 지원 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.
- 사. 관리책임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.
- 아.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 서식 규정함(안 별지 서식).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4조

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4조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4. 2. 5. ~ 2. 13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주택에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화재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- “화재안전취약주택”의 적용 범위를 포함한 용어의 뜻을 정하고, 이에 설치하는 “피난구조설비”의 설치 항목을 정의함.

2)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
- 피난구조설비 설치의 사업계획, 자원조달 및 운영방안, 기초조사 교육·홍보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.

3) 지원대상 및 신청, 설치비용 지원기준을 규정함(안 제5조 ~ 제7조).

- 3층 이상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주택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함

- 4) 설치방법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.
- 5) 심의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.
- 6) 설치 지원 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.
 -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소유자와 거주자에게 사용방법 등 관련 교육 실시와 교육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소유자와 거주자는 적극 사용 실습에 참여하도록 명시함.
- 7) 관리책임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.
- 8)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 서식 규정함(안 별지 서식).

다. 검토의견

- 「소방시설법」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소화·경보·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대상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.

<p>「소방시설법」</p> <p>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소방시설”이란 소화설비, 경보설비, <u>피난구조설비</u>, 소화용수설비,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3. “특정소방대상물”이란 <u>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</u>
<p>「소방시설법 시행령」</p> <p>제5조(특정소방대상물)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<u>별표 2의 소방대상물</u>을 말한다.</p> <p>[별표 2] 1. 공동주택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아파트등: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</p>

- 피난구조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등을 설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구조의 예방과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6. 11.] [법률 제18897호, 2022. 6. 10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
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
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
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10. 12.] [법률 제19335호, 2023. 4. 11.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(이하 “화재예방정책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7. 4.] [법률 제19160호, 2023. 1. 3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소방시설”이란 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구조설비, 소화용수설비,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·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·기준의 개발 및 조사·연구,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관계인의 의무) ① 관계인(「소방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·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관계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□ 소방시설공사업법

[시행 2024. 1. 4.] [법률 제19159호, 2023. 1. 3., 일부개정]

제4조(소방시설업의 등록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(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),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□ 건축법 시행령

[시행 2023. 9. 12.] [대통령령 제33717호, 2023. 9. 12., 일부개정]

[별표 1]

용도별 건축물의 종류(제3조의5 관련)

1. 단독주택[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·공동생활가정·지역아동센터·공동육아나눔터(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·작은도서관(「도서관법」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,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 및 노인복지시설(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)을 포함한다]

가. 단독주택

나. 다중주택: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.

- 1)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
- 2)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(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,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)
- 3)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(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(지하층은 제외한다)가 3개 층 이하일 것. 다만,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(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)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.
- 4)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,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

다. 다가구주택: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
- 1) 주택으로 쓰는 층수(지하층은 제외한다)가 3개 층 이하일 것. 다만,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(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)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.
- 2)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
- 3) 19세대(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)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